

## 산업안전 Q&A

Q

16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중인 공사에 형틀목수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7층 작업중인데 신축건물형틀 목수이다보니 건물외벽을 많이 작업해야 하는데 파이프로 작업난간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안전발판도 없고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에 현장참여 노동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려면 어느 곳에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원수급자와 형틀 하수급자가 있는데 신축건물의 외벽 작업난간대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안전점검 및 안전장비(시설)설치의 책임이 있는지요? 안전점검시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다면 원수급자와 하수급자는 어떠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한다면 몇일 이내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현재 7층 시공중인데 같이 작업하던 인부 중 1명이 손가락뼈가 부러져 산재사고로 처리하려던 중 원수급자의 동의가 즉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0여일 후에 원수급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6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인부의 6주시에 임금이 6주일분의 정상임금이 나오는지 혹은 일부가 차감되는지를 알고 싶으며 예를 들어 6주진단시에는 정상임금에서 어느 정도 차감하는지와 산재사고 처리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등을 설명한 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안전상의 조치)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건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상의 조치의 무는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2 안전점검의 신청자격과 관련 법률조항 유무에 관한 질의와 관련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법률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작업장 안전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가 작업 중에 현저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노동관서에서는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작업장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로 위험상황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588-3088, 324-4545)

3 마지막 사항인 산재사고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등 산업재해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소관이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 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 동시행규칙 제75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을 신청할 때

1 법인(주식회사)이 아니면 지정요건이 안되는지의 여부

별첨 4호 서식의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서에는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의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2 지정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게 지정기관을 신청할 때 노동사무소 담당자의 자진 판단으로 등록거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법인이 아니면 지정요건이 안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 기구에 대한 검사 여부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로 규정되어 있는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함.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여부 결정(판단)

-지정검사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이 관내 행정대상(자체검사대상 기계, 기구 대수 등)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자체검사 대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함(즉,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무조건 지정하는 것은 아님)

저희 회사에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외부 업체와 “안전협의록”을 작성합니다.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하여 문서로서 명시하게 되는데 외자설비를 들여오면서, 외국인 Supervisor가 올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뿐 아니라 타 회사에도 외국인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 어떠한 법에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가 별도로 행해져야 합니다.

다만,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안전협의록 작성 등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안전협의록에 대한 별도의 양식(영문양식 포함)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